

(한국유가공협회 공고 2018 - 14호 : 2018년 11월 14일)

## 제7차년도 한·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2차 재배정 및 추천 세부요령

### 1. 근 거

한국유가공협회 공고 제2018-2호 “제7차년도 한·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권배정 및 추천세부요령”

### 2. 재배정 품목 및 물량

- 가. 치즈 : 25톤
- 나. 식용유장분말 : 1,170톤
- 다. 조제분유 : 820톤

### 3. 품목별 적용 HSK 세번

#### 가. 치즈

- 0406.10.1010, 0406.10.1020, 0406.10.1090, 0406.20.0000, 0406.30.0000  
0406.90.1000(체다치즈), 0406.90.2000, 0406.90.3000, 0406.90.4000, 0406.90.9000
- 단, 이행 10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무관세가 적용되며, 더 이상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#### 나. 식용유장분말

- 0404.10.1019, 0404.10.1099, 0404.10.2119, 0404.10.2129, 0404.10.2139,  
0404.10.2199, 0404.10.2990

#### 다. 조제분유

- 1901.10.1010, 1901.10.1090

### 4. 적용기간 : 공고일 ~ 2018년 12월 31일 까지

### 5. 적용세율 : 0%

6. 재배정대상자 : 신규 및 제7차 한·미 FTA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

7. 재배정방법 : 선착순 배정(공고 후 익일 09:00~물량소진시 까지)

가. B/L,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

나. 동일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정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,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

8. 추천 대상 원산지 : 미합중국

9. 추천서 교부

-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(제2016-173호)에 의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·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.

10. 추천서 유효기간

-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18.12.31일까지로 한다.

11. 추천신청서류

- (1) 한·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 신청서 1부
- (2) 선하증권 사본1부
- (3) 상업송장 사본 1부
- (4)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(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
- (5) 원산지 관련 서류 1부

12. 배정 및 추천대행기관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
13. 추천접수처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
- 추천신청방법 : E-mail ([jmk@koreadia.or.kr](mailto:jmk@koreadia.or.kr)) 만 접수

(사)한국유가공협회